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0.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0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당산동 역세권 지역에 청년 종합지원 공간인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을 조성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 소 재 지: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 지상2층
(역세권 청년주택 내)
- 시설규모: 전용면적 502.638㎡(연면적 887.991㎡)
- 주요시설: 상담실, 개방활동공간, 커뮤니티공간, 미디어실, 인큐베이팅룸 등

나.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2년(2023.1.1.~2024.12.31. 예정)
- 위탁유형: 시설형 위탁
- 위탁사무 내용
 -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 상담’ 지원체계 구축
 - 정부·지자체 ‘청년지원사업 정보 집적’ 및 대민 안내·홍보
 - 청년 삶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및 ‘특화사업’
 - 청년창업기업 인큐베이팅룸 운영 및 지원
 - 센터 홍보사업 및 시설관리·운영
 - 그 밖에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관련 사업
- 소요예산: 금 490,000천원(금사억구천만원)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내역
민간위탁금	계	490,000	
	인건비	250,000	센터장 포함 인력 6인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
	운영비	100,000	시설 관리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140,000	상담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자격: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분야에 경험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청년 수요에 맞는 실질적 공공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 생활권 가까이에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청년지원 및 청년공간 운영 관련 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은 시비보조금 20%를 사업비로 지원받아 「2022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 지침」 운영방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을 선정·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청년공간 운영 현황(21개소)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인력	운영방법	위탁기간	개 관
1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 21 동 2층	218㎡	32	서울시 민간위탁	2021.7.1.~ 2023.12.31.	'16.7.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인력	운영방법	위탁기간	개 관
2	서울 청 년 센 터 (12)	관악 오랑	관악구 신림동 241-22 302호	329㎡	6	자치구 민간위탁	2019.7.1.~ 2022.4.30. *재계약(∼24.9.30.)	'20.2.
3		금천 오랑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612호	293㎡	6	서울시 민간위탁	2020.1.1.~ 2022.12.31.	'20.2.
4		강동 오랑	강동구 올림픽로 796, 4층	403㎡	6	자치구 민간위탁	2020.5.8.~ 2022.12.31.	'20.5.
5		은평 오랑	은평구 통일로 67길 9, A동 2층	358㎡	6	자치구 민간위탁	2020.6.1.~ 2022.12.31.	'20.6.
6		동대문 오랑	동대문구 왕산로 210	481㎡	6	서울시 민간위탁	2020.7.23.~ 2022.12.31.	'20.12.
7		노원 오랑	노원구 상계동 731-5외 1필지 / KB국민은행 노원금융타워 9층	297㎡	6	자치구 민간위탁	2020.9.8.~ 2023.9.7.	'20.11.
8		성동 오랑	성동구 왕십리로 350 4~5층	341㎡	6	자치구 민간위탁	2020.10.1.~ 2022.9.30.	'20.11.
9		마포 오랑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마포한강 푸르지오 지상 1층 101호	271㎡	6	자치구 민간위탁	2020.12.1.~ 2021.12.31. *재계약(∼22.12.31.)	'20.12.
10		광진 오랑	광진구 능동로 245 2~3층	385㎡	6	자치구 민간위탁	2020.1.1.~ 2021.12.31. *재계약(∼23.12.31)	'21.2
11		서초 오랑	서초구 반포동 19-11	556㎡	6	서울시 민간위탁	2021.6.1.~ 2023.12.31.	'21.10
12		강북 오랑	강북구 수유동 269-8	331㎡	6	자치구 민간위탁	2022.1.26.~ 2024.12.31.	'22.4.
13		강서 오랑	강서구 화곡동 1170	602㎡	6	서울시 민간위탁	2022.3.21.~ 2023.12.31.	'22.4.
14	무 중 력 지 대 (6)	대방	동작구 등용로 79-1	446㎡	6	서울시 민간위탁	2020.1.1.~ 2022.12.31.	'15.4.
15		양천	양천구 오목로 359	386㎡	5	서울시 민간위탁	2020.1.1.~ 2022.12.31.	'18.2.
16		도봉	도봉구 마들로11길 75	441㎡	5	서울시 민간위탁	2018.4.1.~ 2022.12.31.	'18.6.
17		성북	성북구 아리랑로 50	343㎡	5	서울시 민간위탁	2020.1.1.~ 2022.12.31.	'18.6.
18		서대 문	(홍제) 서대문구 통일로 484 2층	317㎡	8	서울시 민간위탁	2018.3.1.~ 2022.12.31.	'18.7.
			(무악재) 서대문구 통일로 358-1	133㎡	1			
19	영등포	영등포구 당산로 235	301㎡	3	자치구 민간위탁	2021.9.1.~ 2023.8.31.	'19.8.	
20	청년허브		은평구 통일로 684	1,882㎡	20	서울시 민간위탁	2021.1.1.~ 2023.12.23.	'13.4.
21	청년교류공간		마포구 방울내로5길 42	314㎡	4	서울시 민간위탁	2020.1.1.~ 2022.12.31.	'18.3.

○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제12조제2항에서는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 사업 운영 등 청년지원 및 활동의 통합적 플랫폼으로서 전문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민간위탁체 선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관리 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하 생략>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및 위탁 사무의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위탁기간
 5.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계약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